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5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2월 17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“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”고 명시하고 있지만,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조사와 중복 우려가 있고, 학교 구성원(학교, 학생, 학부모)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2. 주요내용

- “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” 를 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5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
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중 “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”를 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
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①교육 감은 제4조의 계획 수 립을 위해 매년 <u>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 다.</u></p> <p>② <u>실태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는 제4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해 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①교육 감은 제4조의 계획 수 립을 위해 매년 <u>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.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